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 3. 21(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11. 1. 31
- 나. 제안자 : 박승희 · 김병철 · 제갈원영 의원
- 다. 회부일자 : 2011. 2.
- 라. 상정일자 : 2011. 3. 15(제19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박승희 의원
 - 검토보고 :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춘수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시행자 위주의 도로점용공사는 해당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교통 불편 및 사고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의 계획단계부터 공사 중 교통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통해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사회적비용 절감은 물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적용대상을 도로 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공사로 함(안 제3조)
- 공사 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 전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
-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거 구성·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도로점용시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소통대책 수립 대상을 도로폭 20m를 초과하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공사로 하였으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내용과 이행여부 확인, 대행자 지정, 심의, 시정명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 제정으로 도로점용 공사장이 시행자 위주에서 보행자 위주로 전환되어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이점이 있음. 다만, 공사시행자의 교통소통대책수립에 따른 비용부담 발생과 안 제9조에서 교통소통대책이 인천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 안건 심의대상이 적정한지 논의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 이재호 의원
 - 적용 대상중 도로폭 20m이상과 점용기간 20일 이상인 경우에 본 조례안이 적용되는데 20일이하인 경우는 적용을 받지 않는바 도로의 주인이 시민인 점을 감안하여 보다 엄격한 적용을 요함.
- 정수영 의원
 - 교통영향분석대책위원회의 최근 평균 개최 실적과 본 조례안이 통과 되면 안건이 새로이 추가되는 것인가?
- 안병배 의원
 - 공사시행자는 그동안 교통처리대책에 대한 수립을 하지 않았는지와 발생비용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하나?

<답 변>

- 안영규 건설교통국장
 - 엄정한 심의가 되도록 하겠음.
 - 평균 매달 2회 개최되며, 새로운 안건이 추가됨.
 - 교통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고 있으며, 비용은 공사비에 포함 되어 있음.

5. 토론요지 : 원안가결

- 가. 찬 성 : 김병철, 이도형, 정수영, 안병배, 류수용, 이성만, 이재호, 제갈원영 위원
-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 찬성 : 8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청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인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라 함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4. "공사시행자" 라 함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 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 이외의 공사
 - ② 도로점용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로 폭 20미터 이하의 도로와 연결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도로 폭 20미터 이하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시행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시정명령)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99조제2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공사시행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